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269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Ⅰ. 개요 ·····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2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김미애의원안, 김기표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윤종오의원안, 정부안) ····· 2

Ⅰ. 개요

1.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26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8. 20.

(3) 회 부 일 : 2025. 8. 2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2년 당시 윤석열 정권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였음.

그러나 법인세 최고세율 하향에 따른 세입 기반 약화를 우려하여 부자 감세 기조에 반대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는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씩 하향하였음.

이에 지난 2022년 103조 5,700억 원에 달했던 법인세수는 2023년 80조 4,200억 원, 2024년 62조 5,000억 원으로까지 감소했고, 이와 연계되어 2023년 56조 4천억 원, 2024년 30조 8천억 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이에 윤석열 정권의 법인세 완화로 유발된 부자 감세 정책 이전의 법인세율 기준으로 원상회복하여 조세를 정상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김미애의원안, 김기표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윤종오의원안, 정부안)

<table>
<tr><th>현 행</th><th>김미애의원안</th><th>최은석의원안</th></tr>
<tr>
<td>□ 과세표준 및 세율(제55조)
○ 내국법인
<table>
<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r><td>2억원 이하</td><td>9%</td></tr>
<tr><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19%</td></tr>
<tr><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21%</td></tr>
<tr><td>3천억원 초과</td><td>24%</td></tr>
</table>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table>
<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r><td>200억원 이하</td><td>19%</td></tr>
<tr><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21%</td></tr>
<tr><td>3천억원 초과</td><td>24%</td></tr>
</table>
</td>
<td>□ 과세표준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 내국법인
<table>
<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r><td>5억원 이하</td><td>10%</td></tr>
<tr><td>5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20%</td></tr>
<tr><td>3천억원 초과</td><td>22%</td></tr>
</table>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td>
<td>□ 과세표준 단순화 및 세율 인하
○ 내국법인
<table>
<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r><td>2억원 이하</td><td>8%</td></tr>
<tr><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18%</td></tr>
<tr><td>200억원 초과</td><td>20%</td></tr>
</table>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table>
<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r><td>200억원 이하</td><td>19%</td></tr>
<tr><td>200억원 초과</td><td>20%</td></tr>
</table>
○ 시행일: 2026. 1. 1.</td>
</tr>
</table>

<table>
<tr><th>현 행</th><th>김미애의원안</th><th>최은석의원안</th></tr>
<tr><td></td><td>○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td><td>○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은 종전규정 적용</td></tr>
<tr><td>김기표의원안</td><td>안도걸의원안</td><td>윤종오의원안</td></tr>
<tr><td>□ 최고세율 인상

○ 내국법인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2억원 이하</td><td>9%</td></tr><tr><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19%</td></tr><tr><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21%</td></tr><tr><td>3천억원 초과</td><td>25%</td></tr></table>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200억원 이하</td><td>19%</td></tr><tr><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21%</td></tr><tr><td>3천억원 초과</td><td>25%</td></tr></table>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td><td>□ 상위 2개 과세표준 세율 인상

○ 내국법인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2억원 이하</td><td>9%</td></tr><tr><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19%</td></tr><tr><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22%</td></tr><tr><td>3천억원 초과</td><td>25%</td></tr></table>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200억원 이하</td><td>19%</td></tr><tr><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22%</td></tr><tr><td>3천억원 초과</td><td>25%</td></tr></table>
○ 시행일: 2026. 1. 1.

○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은 종전규정 적용</td><td>□ 상위 3개 과세표준 세율 인상

○ 내국법인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2억원 이하</td><td>9%</td></tr><tr><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20%</td></tr><tr><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22%</td></tr><tr><td>3천억원 초과</td><td>25%</td></tr></table>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200억원 이하</td><td>20%</td></tr><tr><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22%</td></tr><tr><td>3천억원 초과</td><td>25%</td></tr></table>
○ 시행일: 2026. 1. 1.</td></tr>
</table>

<table>
<tr><th>윤준병의원안, 정부안</th><th></th><th></th></tr>
<tr><td>□ 전구간 세율 인상

○ 내국법인

<table>
<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r><td>2억원 이하</td><td>10%</td></tr>
<tr><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20%</td></tr>
<tr><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22%</td></tr>
<tr><td>3천억원 초과</td><td>25%</td></tr>
</table>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table>
<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r><td>200억원 이하</td><td>20%</td></tr>
<tr><td>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td><td>22%</td></tr>
<tr><td>3천억원 초과</td><td>25%</td></tr>
</table>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윤준병의원안)
2026. 1. 1.(정부안)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td><td></td><td></td></tr>
</table>

* 김미애의원안 2024. 8. 8. 발의(의안번호 2639), 김기표의원안 2025. 7. 29. 발의(의안번호 11816), 안도걸의원안 2025. 7. 31. 발의(의안번호 11898), 최은석의원안 2025. 8. 4. 발의(의안번호 11961), 윤준병의원안 2025. 8. 20. 발의(의안번호 12269), 윤종오의원안 2025. 8. 29. 발의(의안번호 12528),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6)

□ 개정안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법인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김미애의원안은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로 단순화하면서 5억원 이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10%, 5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서는 20%, 3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최은석의원안은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로 단순화하면서 2억원 이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8%,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서는 18%, 2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김기표의원안은 3천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의 적용 세율을 1%p 인상하려는 것임.

안도걸의원안은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과 3천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의 적용 세율을 1%p 씩 인상하려는 것임.

윤종오의원안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 3천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의 적용 세율을 1%p 씩 인상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안과 정부안은 전 과세표준 구간 적용 세율을 1%p 씩 인상하려는 것임.

또한, 2024년 세법개정 이후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1]에 대

1)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

해서는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김미애의원안[2]을 제외한 개정안은 일반 세율에 맞추어 이를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단, 최은석의원안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경우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은 현행과 같이 19%로 유지하려는 것임.

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3. 제2호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같은 호에 따른 전환일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2) 김미애의원안 발의 당시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음.

[개정안별 세율 비교(일반 내국법인)]

<table>
<tr><th>과표구간</th><th>현행</th><th>김미애
의원안</th><th>김기표
의원안</th><th>안도걸
의원안</th><th>최은석
의원안</th><th>윤준병
의원안</th><th>정부안</th><th>윤종오
의원안</th></tr>
<tr><td>2억원 이하</td><td>9%</td><td rowspan="2">10%</td><td>9%</td><td>9%</td><td>8%</td><td colspan="2">10%</td><td>9%</td></tr>
<tr><td>2~5억원</td><td rowspan="2">19%</td><td rowspan="2">19%</td><td rowspan="2">19%</td><td rowspan="2">18%</td><td colspan="2" rowspan="2">20%</td><td rowspan="2">20%</td></tr>
<tr><td>5~200억원</td><td rowspan="2">20%</td></tr>
<tr><td>200~3,000억원</td><td>21%</td><td>21%</td><td>22%</td><td rowspan="2">20%</td><td colspan="2">22%</td><td>22%</td></tr>
<tr><td>3,000억원 초과</td><td>24%</td><td>22%</td><td>25%</td><td>25%</td><td colspan="2">25%</td><td>25%</td></tr>
<tr><td>과세표준 구간</td><td>4개</td><td>3개</td><td>4개</td><td>4개</td><td>3개</td><td colspan="2">4개</td><td>4개</td></tr>
</table>

[개정안별 세율 비교(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table>
<tr><th>과표구간</th><th>현행</th><th>김미애
의원안</th><th>김기표
의원안</th><th>안도걸
의원안</th><th>최은석
의원안</th><th>윤준병
의원안</th><th>정부안</th><th>윤종오
의원안</th></tr>
<tr><td>200억원 이하</td><td>19%</td><td rowspan="4">-</td><td>19%</td><td>19%</td><td>19%</td><td colspan="2">20%</td></tr>
<tr><td>200~3,000억원</td><td>21%</td><td>21%</td><td>22%</td><td rowspan="2">20%</td><td colspan="2">22%</td></tr>
<tr><td>3천억원 초과</td><td>24%</td><td>25%</td><td>25%</td><td colspan="2">25%</td></tr>
<tr><td>과세표준 구간</td><td>3개</td><td>3개</td><td>3개</td><td>2개</td><td colspan="2">3개</td></tr>
</table>

주: 김미애의원안 발의 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별도의 세율 규정이 없었음(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

가. 연혁

□ 법인세 최고세율은 1998년 28%에서 2002년 27%, 2005년 25%, 2009년 22%로 인하되어 왔으며, 2012년부터는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이 신설되어 그 세율이 22%에서 20%로 인하되었음. 2018년부터는 3,000억원 초과 구간의 과세표준이 신설되어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인상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전 구간에서 세율이 △1%p 인하되어 최고세율이 24%로 인하되었음.

[법인세율 변경 현황]

<table>
<tr><th>과표구간</th><th>1998</th><th>2002</th><th>2005</th><th>2008</th><th>2009</th><th>2010</th><th>2012</th><th>2018</th><th>2023</th></tr>
<tr><td>1억원 이하</td><td>16%</td><td>15%</td><td>13%</td><td rowspan="2">11%</td><td rowspan="2">11%</td><td rowspan="2">10%</td><td rowspan="2">10%</td><td rowspan="2">10%</td><td rowspan="2">9%</td></tr>
<tr><td>1~2억원</td><td rowspan="5">28%</td><td rowspan="5">27%</td><td rowspan="5">25%</td></tr>
<tr><td>2~200억원</td><td rowspan="3">25%</td><td rowspan="3">22%</td><td rowspan="3">22%</td><td>20%</td><td>20%</td><td>19%</td></tr>
<tr><td>200~3,000억원</td><td rowspan="2">22%</td><td>22%</td><td>21%</td></tr>
<tr><td>3,000억원 초과</td><td>25%</td><td>24%</td></tr>
<tr><td>과세표준 구간</td><td colspan="6">2개</td><td>3개</td><td colspan="2">4개</td></tr>
</tabl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조세」등 재구성

우리나라 법인세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이후 2015년까지 국세 중 법인세 비중은 축소되는 추세였으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다시 법인세 비중이 확대되어 2019년에는 그 비중이 24.6%에 달하였음.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비중이 19.4%로 감소하였다가 기업실적 회복과 함께 2022년 26.2%로 증가하였으나, 2023년에는 대내외적 경제 상황으로 기업 실적이 부진하여 23.4%로 다시

감소하였고,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로 인한 2023년 기업 영업이익의 하락 등으로 2024년에는 18.6%로 더욱 감소하였음.

[우리나라 법인세수 현황]

(단위: 조원, %)

연 도	국세(A)	법인세(B)	비중(B/A)
2012	203.0	45.9	22.6
2013	201.9	43.9	21.7
2014	205.5	42.7	20.8
2015	217.9	45.0	20.7
2016	242.6	52.1	21.5
2017	265.4	59.2	22.3
2018	293.6	70.9	24.1
2019	293.5	72.2	24.6
2020	285.5	55.5	19.4
2021	344.1	70.4	20.5
2022	395.9	103.6	26.2
2023	344.1	80.4	23.4
2024	336.5	62.5	18.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조세」 등 재구성

□ 한편, 최근 10년간의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 및 2024년도 과표구간별 법인세 신고 현황은 다음과 같음.

[최근 10년간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평균 실효세율]

(단위: %)

과세표준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16.1	16.6	17.2	17.6	19.1	17.5	18.1	18.5	17.8	16.7
2억원 이하	8.9	8.9	9.1	9.0	8.9	9.1	9.3	10.1	9.3	9.2
2~200억원	14.8	15.0	15.2	15.2	15.0	14.7	14.5	14.9	14.5	13.4
200~3,000억원	18.6	19.2	19.8	20.1	20.1	20.2	20.5	20.6	19.8	19.0
3,000억원 초과	16.5	17.4	18.4	18.7	22.5	19.6	21.3	20.5	20.0	20.4

주: 법인세 신고기준,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100. 외국납부세액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국세청

[과표구간별 법인세 신고 현황(2024년)]

(단위: 개, %, 백만원)

구분		전체	2억원이하	2~200억원	200~3,000억원	3,000억원초과
신고 법인수	전체	1,058,498	936,576	120,147	1,681	94
	(비중)	(100.00)	(88.48)	(11.35)	(0.16)	(0.01)
총 부담세액	전체	58,164,867	1,823,667	17,783,674	19,360,964	19,196,562
	(비중)	(100.00)	(3.14)	(30.57)	(33.29)	(33.00)
실효세율		16.7	9.2	13.4	19.0	20.4

주: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100
자료: 국세통계포털

□ 법인세의 과세기반을 살펴보면 상위 소득금액 구간의 법인에 대한 세부담 집중도가 높은 것이 특징임. 2023년 기준으로 5,00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신고한 법인이 전체 법인수(103.1만개)의 0.01%(100개)를 차지하지만 과세표준의 34.0%를 차지하고 총부담세액의 38.0%를 차지하고 있음. 소득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수는 4,525개로 전체 법인 수의 0.4%인데, 과세표준의 70.6%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총부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4%에 달하고 있음.

법인세 실효세율은 상위 소득금액 구간으로 갈수록 누진적으로 증가하는데, 소득금액 5,000억원 초과구간에서 실효세율이 소폭 감소하여 19.8%로 나타나고 있음.

[법인세의 소득금액별 과세기반 현황(2023년 신고 기준)]

구분	법인수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실효세율
	만개	%	누적 %	조원 (A)	%	누적 %	조원 (B)	%	누적 %	B/A, %
합계	103.1	100	-	459.1	100	-	81.6	100	-	17.8
0 이하	42.3	41.0	100.0	0.0	0.0	100.0	0.1	0.1	100.0	-
0~1억원	37.5	36.4	59.0	8.8	1.9	100.0	0.8	1.0	99.9	9.1
1~5억원	16.5	16.0	22.6	31.7	6.9	98.1	2.9	3.6	98.9	9.2
5~10억원	3.1	3.0	6.6	19.0	4.1	91.2	2.3	2.8	95.3	12.0
10~50억원	2.8	2.8	3.6	51.1	11.1	87.0	7.5	9.2	92.5	14.6
50~100억원	0.4	0.4	0.8	24.4	5.3	75.9	4.1	5.0	83.3	16.6
100~500억원	0.4	0.4	0.4	63.8	13.9	70.6	11.7	14.3	78.4	18.4
500~1,000억원	0.05	0.05	0.1	31.1	6.8	56.7	6.3	7.7	64.0	20.1
1,000~5,000억원	0.04	0.04	0.05	73.1	15.9	49.9	15.0	18.4	56.3	20.5
5,000억원 초과	0.01	0.01	0.01	156.1	34.0	34.0	31.0	38.0	38.0	19.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조세」

□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23년 기준 3.9%로 G7 평균인 3.1%에 비해 0.8%p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인 3.7%와 비교하더라도 0.2%p 높은 수준임.

[OECD 주요국가의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중 비교]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한국		4.0	3.2	3.6	5.0	3.9
G7	일본	3.8	3.8	4.4	4.8	4.4
	캐나다	3.7	4.1	4.9	4.6	4.6
	영국	2.3	2.4	2.9	3.2	3.5
	프랑스	2.1	2.3	2.4	2.8	2.3
	독일	1.9	1.6	2.3	2.3	2.3
	이탈리아	1.9	2.0	1.9	2.8	2.7
	미국	1.3	1.4	1.7	2.0	2.1
	평균	2.4	2.5	2.9	3.2	3.1
OECD 평균		2.9	2.8	3.3	3.8	3.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우리나라의 법인세의 총조세 대비 비중은 2023년 기준 20.3%로 G7 평균 11.0% 및 OECD 평균 15.4%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임.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국제비교]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한국	21.4	16.8	17.4	22.6	20.3
G7 평균	10.1	10.2	11.5	12.5	11.0
OECD 평균	12.7	12.0	13.6	15.6	15.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검토의견

□ 상반된 입법취지를 가진 개정안에 대하여 ①법인세율 인상이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을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인지 여부, ②법인세율과 투자·고용·경제성장 간 관계, ③법인세율의 적정 수준 및 국제적 추세, ④세수효과 등 주요 쟁점별로 찬반논거를 중심으로 비교·검토함.

□ 첫째,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13.8조원), 2차 추가경정예산(31.8조원)에 이어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원으로 전년도 본예산(673.3조원) 대비 54.7조원(8.1%) 증가하였는데, 법인세율 인상이 이러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인지 여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함.

먼저 법인세율 인상에 찬성하거나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은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세입기반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자체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법인세수는 2022년 103.6조원으로 전체 국세의 26.2%에 달하였으나 2023년에는 80.4조원(23.4%), 2024년에는 62.5조원(18.6%)으로 감소하여 최근 세입기반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

조세부담률[3] 역시 2022년 22.1%에서 2023년 19.0%, 2024년 17.6%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일실을 방지하고 각 경제주체에게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부담을 부과할 필요하다는 입장임.

3) 명목GDP 대비 총조세 비중

[최근 5년간 법인세수 현황]

(단위: 조원, %)

연 도	국세(A)	법인세(B)	비중(B/A)
2020	285.5	55.5	19.4
2021	344.1	70.4	20.5
2022	395.9	103.6	26.2
2023	344.1	80.4	23.4
2024	336.5	62.5	18.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조세」 등 재구성

[명목 GDP 대비 총조세 비중(조세부담률) 추이]

(단위: %)

연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조세부담률	18.8	18.8	18.8	20.6	22.1	19.0	17.6

자료: 기획재정부

반면,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거나 인하에 찬성하는 입장은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에 앞서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출 소요 발생에 따라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세율 자체의 인상보다 지출 구조조정 및 각종 비과세·세액감면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임.

국세감면액은 매년 증가하여 2024년에는 그 규모가 70조 5,171억원에 달하였고, 국세감면액을 국세수입총액으로 나눈 국세감면율은 16.1%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4], 3년 연속 법정한도[5] 초과가 예상됨.

4) ('14.) 14.3% → ('15.) 14.1% → ('16.) 13.4% → ('17.) 13.0% → ('18.) 13.0% → ('19.) 13.9% → ('20.) 14.8% → ('21.) 13.5% → ('22.) 13.0% → ('23.) 15.8% → ('24.) 16.1%

5) 「국가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감면율을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의 평균값에 0.5%를 더한 비율 이하로 관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법정한도 준수를 위해 국세감면율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국세수입 총액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세감면액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임.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 및 전망(2019~2026)]

(단위: 억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국세감면액(A)	495,700	529,357	570,248	635,484	697,664	705,171	764,719	805,277
국세수입총액(B)	3,066,963	3,036,717	3,639,730	4,229,237	3,703,803	3,656,829	4,003,076	4,195,673
국세감면율 [A/(A+B)]	13.9	14.8	13.5	13.0	15.8	16.1	16.0	16.1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3.3	13.6	14.3	14.6	14.3	14.6	15.5	16.5

* 국세수입총액: 국세수납액에 지방소비세액을 포함한 금액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산술평균 + 0.5%p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국가재정법」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① 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이란 법 제61조에 따라 정부가 작성한 결산 중 국세수납액(결산을 작성하기 전 회계연도의 경우에는 법 제33조의 예산안 중 국세 세입예산액)과 「부가가치세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88조제1항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의 국세감면액을 말한다.
③ 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천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조세특례 제도의 연장비율이 최근 7년간 86.7%에 달하여 관행적인 적용기한 연장 문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 정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6)]

[일몰기한 도래 조세지출 연장 현황(항목)]

(단위: 건, %)

연도	일몰도래(A)	연장(B)	종료	연장 비율(B/A)
2019년	34	27	7	79.4%
2020년	54	44	10	81.5%
2021년	86	77	9	89.5%
2022년	74	64	10	86.5%
2023년	71	65	6	91.5%
2024년	29	22	7	75.9%
2025년 (정부제출안)	72	65	7	90.3%
최근 7년 평균	60	52	8	86.7%

주: 연장: 단순한 기한 연장 및 제도를 재설계하면서 일몰기한도 연장한 경우를 모두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일몰기한 도래 조세지출 연장 현황(금액)]

(단위: 억원, %)

연도	조세지출(A)	일몰도래(B)	연장(C)	종료(D)	연장 비율(C/B)
2019년	495,700	35,630	35,432	198	99.4
2020년	529,357	83,598	65,741	17,8571)	78.6
2021년	570,248	62,105	61,844	261	99.5
2022년	635,484	108,868	108,043	825	99.2
2023년	697,664	31,731	31,677	54	99.8
2024년	705,171	15,812	15,630	182	98.8
2025년(전망)[2)]	764,719	177,690	172,129	5,561	96.9

주1: 코로나19관련 지원으로 '20년 한시적 도입된 조특법 §99의11,§108의4,§108의5,§109의4의 감면액 17,127억원을 포함(코로나19지원 조항 제외 시 일몰 연장비율은 98.9%)
주2: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상 2025년 전망액 기준

6) 국회입법조사처, '조세특례 일몰제도 개선방안: 관행적 일몰 연장에서 벗어나 실효적 일몰제도 정착 필요', 2023. 12. 8.

□ 둘째, 법인세율과 투자·고용·경제성장 간 관계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먼저 법인세율 인상에 찬성하거나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은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이 투자를 늘려 경제가 성장한다는 주장에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고 실증적인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임.

한국신용정보평가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의 세부담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세부담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음(-)의 값을 나타내기는 했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낮았음.[7)]

미국에서의 감세정책은 기대했던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반면,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의 급증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켰고 감세정책의 혜택이 부유층에 집중됨으로 인해 분배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드는 부작용도 있었음.[8)]

법인세율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한다는 입장과 양자간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양립하는 상황임.[9)]

반면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거나 인하에 찬성하는 입장은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을 제시함.

---

7) 김우철,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5.

8) 이준구, 「재정학」6판, p.652.

9) 국회예산정책처,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 2024. 6.

기획재정부는 2022년 보도자료를 통해 다양한 실증 연구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고용 증가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고 미국 등 외국 사례에서도 기업 투자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함.[10)]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은 법인세율 3%p 인상시 투자 △0.7%, 고용 △0.2%, GDP △0.3% 감소를 유발한다고 발표하였으며, '22.4월 OECD 통계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 전후 2년 평균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미국('18년)과 프랑스('16년)에서 유의미한 증가 현상이 나타났음.

또한, 국내 상장기업의 재무상태, 수익성 및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통제한 후 분석한 결과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이 1%p 인하될 때 투자율은 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가 있음.[11)]

1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 7. 22.

11) 남창우,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KDI 정책포럼 제264호, KDI, 2016.11. p.6.

□ 셋째, 법인세율의 적정 수준 및 국제적 추세에 대한 견해차가 존재함.[12)]

먼저 법인세율 인상에 찬성하거나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은 법인세율 인하는 국제적인 추세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 및 실제 부담세액이 높은 편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함.[13)]

기획재정부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종식 이후 자국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과 재정여건에 맞추어 조세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추세가 강화되었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들이 존재한다는 입장임.[14)]

영국은 2017년 법인세율을 20%에서 19%로 인하하였으나 2023년에 25%로 인상하였고, 프랑스 역시 최고세율을 2018년 33.33%에서 2022년 25%까지 지속적으로 인하하였으나 2025년 대기업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법인세율을 인상하였음. 이 외에도 2025년 튀르키예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30%로 5%p 인상하였고, 에스토니아는 20%에서 22%로 2%p 인상한 바 있음.[15)]

또한, 최고세율 기준(지방세 포함, 2024년 기준)으로는 OECD 국가 중 G20 국가(27.4%) 대비 현행 세율(26.4%)이 낮고, 2023년 기준

---

12) 다만, 우리나라는 4단계 누진 법인세율 체계를 채택하고 있어 최고세율에 따른 국제적 비교 실효성은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13)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p. 49, 2025. 7. 31.

14)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 역시 지난 20년간 법인세율은 감소 추세였으나, 2023년에 그 추세가 멈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The downward trend in statutory CIT tax rates seems to have halted with far more jurisdictions implementing rate increases than decreases in 2023,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first edition of the Tax Policy Reforms report. The CIT rate increases observed were of significant magnitude. (2024 OECD Tax Policy Reforms)

15)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조세", p. 242, 2025. 4.

조세부담률(19.0%) 역시 G7(24.5%) 및 OECD 평균(25.4%)에 비해 낮음.

[경제규모별 법인세 최고세율('24년 기준) 비교]

구 분		국 가		법인세율	
				지방세 제외	지방세 포함
OECD 중 G20 (11개국)	OECD 중 30-50 (7개국)	대한민국	현행	24.0	26.4
			정부안	25.0	27.5
		프 랑 스		25.0	25.8
		독 일		15.0	30.1
		이탈리아		24.0	27.8
		일 본		23.2	29.7
		영 국		25.0	25.0
		미 국		21.0	25.6
		호 주		30.0	30.0
		멕 시 코		30.0	30.0
		튀르키예		25.0	25.0
		캐 나 다		15.0	26.0
평균		OECD 중 30-50		22.5	27.2
		OECD 중 G20		23.4	27.4
		OECD 평균		-	23.9
		G7 평균		-	27.2

주1: 프랑스는 '25년 대기업에 한해 한시적('25년) 법인세율 인상
(기본 법인세율 25%, 매출액 10억유로 이상 +5.2%p, 30억유로 이상 +10.3%p)
주2: OECD 30-50 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인 국가
G20은 다자간 금융협력을 목적으로 1999년에 전세계 선진·신흥 20개국이 결성한 협의체
*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명목 GDP 대비 총조세 비중(조세부담률) 비교]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대한민국	18.8	18.8	20.6	22.1	19.0
G7 평균	24.0	24.2	24.9	25.1	24.5
OECD 평균	24.9	24.8	25.5	25.6	25.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조세」

반면,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거나 인하에 찬성하는 입장은 국제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큰 흐름이므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주요국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임.

일본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기준)은 2011년 39.5%에서 2018년에 29.7%로 인하되었고, 미국은 2018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연방정부 기준)을 35%에서 21%로 14%p 인하하였지만,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국세 기준)을 2018년 22%에서 25%로 인상하였다가 2023년에서야 24%로 낮추어 주요국의 법인세율 인하 추세에 뒤늦게 합류하였다는 것임.

또한, 여전히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26.4%로 OECD 평균인 23.9% 대비 높고,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중(3.9%) 및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20.3%) 역시 G7 평균(3.1%, 11.0%)과 OECD 평균(3.7%, 15.4%)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 10년간(2014년~2024년) 법인세 최고세율 변화를 보면, 우리나라는 24.2%에서 26.4%로 2.2%p 상향된 반면, G7평균은 31.4%에서 27.1%로 4.3%p 하락하였음.

아울러 최근 미국과의 통상 불확실성 증대, 관세 인상 등에 따라 각국에서 앞다투어 자국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 중인 시점에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세율 인상은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것임.

[OECD 주요국가의 명목 GDP 대비 법인세 비중 비교]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한국		4.0	3.2	3.6	5.0	3.9
G7	일본	3.8	3.8	4.4	4.8	4.4
	캐나다	3.7	4.1	4.9	4.6	4.6
	영국	2.3	2.4	2.9	3.2	3.5
	프랑스	2.1	2.3	2.4	2.8	2.3
	독일	1.9	1.6	2.3	2.3	2.3
	이탈리아	1.9	2.0	1.9	2.8	2.7
	미국	1.3	1.4	1.7	2.0	2.1
	평균	2.4	2.5	2.9	3.2	3.1
OECD 평균		2.9	2.8	3.3	3.8	3.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국제비교]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한국	21.4	16.8	17.4	22.6	20.3
G7 평균	10.1	10.2	11.5	12.5	11.0
OECD 평균	12.7	12.0	13.6	15.6	15.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법인세 최고세율 현황(지방세 포함): 국제비교]

(단위 : %, %p)

구분	2014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차이 ('24-'14)
대한민국	**24.2**	27.5	27.5	27.5	27.5	26.4	**26.4**	**2.2**
캐나다	26.2	26.6	26.3	26.2	26.1	26.1	26.1	△0.1
프랑스	38.0	34.4	32.0	28.4	25.8	25.8	25.8	△12.2
독일	29.7	29.9	29.8	29.9	29.9	29.9	29.9	0.2
이탈리아	31.3	27.8	27.8	27.8	27.8	27.8	27.8	△3.5
일본	34.6	29.7	29.7	29.7	29.7	29.7	29.7	△4.9
영국	21.0	19.0	19.0	19.0	19.0	25.0	25.0	2.0
미국	39.1	25.9	25.8	25.8	25.8	25.8	25.6	△13.4
G7 평균	**31.4**	27.6	27.2	26.7	26.3	27.2	**27.1**	**△4.3**

주 : 전체 OECD 국가의 법인세 최고세율 현황은 [부록] OECD 주요 조세통계 참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조세」

□ 넷째, 법인세율 조정에 따른 세수변화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대립하고 있음.

먼저 법인세율 인상에 찬성하거나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은 현재 회복과 성장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인상하지 않을 경우 부채 보전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2024년 기준 법인세는 국세수입의 18.6%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세원인데,[16]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및 양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의 구조적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법인세율 인하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17]

반면,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거나 인하에 찬성하는 입장은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감소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임.

법인세 최고세율이 3%p 인하될 경우 2023년에 40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0.6% 수준인 2.4조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경제성장에 따라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장기적으로 세수규모가 연간 13조원 수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18]

---

16) 2022년 26.2% → 2023년 23.4% → 2024년 18.6%

17) 입법조사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V」, p. 383, 2024. 8.

18) 김학수,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KDI FOCUS, 2022.10.4. p10.

□ 한편, 김미애의원안과 최은석의원안은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법인세율 단순화는 과세체계의 복잡성 및 비효율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수 국가들은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과세하며, 특정 정책목적을 위해서 매출액, 과세표준, 기업의 법적 규모, 주주의 구성 등 여러 기준을 혼합하여 설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감세율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OECD 38개 회원국 중 다수의 국가가 1개(24개국) 또는 2개(10개국)의 과세표준 구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3개 이상의 과세표준 구간을 채택한 국가는 우리나라(4개)를 비롯하여 룩셈부르크, 영국(3개)과 코스타리카(5개)뿐임.

[OECD 국가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수]

과표구간수	해당 국가	
1개	24개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튀르키예, 미국
2개	10개국	호주, 벨기에, 칠레, 프랑스, 일본,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3개	2개국	룩셈부르크, 영국
4개	1개국	**대한민국**
5개	1개국	코스타리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조세」

법인세의 과표구간을 세분화하는 누진세 체계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으나[19], 과세체계의 복잡성 및 비효율성이 커지는 문제도 상존함.

다단계 누진세율은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고, 높은 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인 분할 등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

IMF는 '2017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에서 우리나라 법인세에 대해 과표구간 단일화로 왜곡을 없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권고하였음.[20]

다만, 김미애의원안은 하위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9%에서 10%로 인상하려는 것인데,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3억원 이상' 과세표준 구간에 속하는 법인의 산출세액은 감소하는 한편, '3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에 속하는 법인의 산출세액은 증가하여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남.

[김미애의원안 관련 전체 산출세액 변화(귀속연도 기준)]

(단위: 억원)

과세표준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3억원 이하	2,468	2,632	2,779	2,928	3,077
3억원 ~ 5억원 이하	△9,580	△10,216	△10,788	△11,369	△11,946
5억원 ~ 200억원 이하	△2,520	△2,687	△2,837	△2,990	△3,142
200억원 ~ 3,000억원 이하	△7,396	△7,888	△8,329	△8,777	△9,223
3,000억원 초과	△38,158	△40,692	△42,970	△45,283	△47,58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9)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2018. 8.

20) IMF는 2018년 2월 한국보고서에서 과세표준 구간의 단순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세수 확보를 권고한 바 있음. "Significant efficiency and revenue gains could come from addressing multiple distortions in corporate income taxation, including by reducing the number of corporate income tax rates to one."

또한, 최은석의원안은 최상위 과세표준 구간인 3,0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p 인하하는 효과를 유발하게 되는데, 해당 과표구간이 총 부담세액의 3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폭의 세수감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21)]

□ 따라서 법인세율 및 과표구간의 조정은 앞서 살펴본 최근의 경제상황, 해외 동향, 세수효과 등과 더불어, 법인세 외 다른 세목(稅目)의 개정 및 각종 조세특례의 신설·개편·일몰 등에 따른 실효세율, 세부담 및 조세지출 변동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21) 2024년 기준 총 부담세액 58조원 중 19조원(33%)